

심사보고서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청원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0
----------	-----

2019. 9. 2.(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소개의원 : 이상욱 의원(청원인 : 서정의)
- 나. 청원일자 : 2019년 7월 18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7월 19일
- 라. 상정일자 : 2019년 8월 27일
 -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청원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결과(채택)

2. 청원 설명 요지

가. 청원요지

-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과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소음측정 조사 실시를 청원함

나. 청원이유

-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복되는 항공기소음피해로 고통이 크고 정부에서 소음피해 손해보상은 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의 개장과 시설의 관리 및 주민 복지 등에 관한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부재함

다. 청원 소개 요지 설명(소개의원 이상욱 의원)

- 서정의 외 지역주민 283명은 1978년도 청주비행장 개장 이래로 청주 국제공항 인근 외하동, 내수2리, 내수3리, 입상1리, 원통1리, 원통2리, 외남동, 오동동 지역이 청주공항 소음피해로 부동산가치 하락, 교육비 상승, 영농 활동 제약, 주거환경 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지역 소음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청원하여 소개함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 본 청원은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지역 주민 지원 근거 조례 제정과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피해 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소음측정 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청원임
-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면
 -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소음측정망 각 지점별 항공기소음도 범위는 68~84웨클로 6개 지점 중 3개 지점(외남동 80, 입상1구 84, 신대2구 80)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음대책 지역에 해당하는 항공기소음 한도인 75웨클 이상임

-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적용되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청주국제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국방부)을 피고로 하는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증빙을 위한 소음측정 비용이 발생함
 - 이에 대해 충청북도에 청원심사 관련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9.8.16.)국회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군 소음법안의 통합 법률(안)인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 실태 파악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해지므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고 피해주민의 숙원 사항이 일거에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소음피해지역의 정기적인 소음 측정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면
-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개 지점(청원구 외남동, 오창읍 신평리, 내수읍 입상리·은곡리, 북이면 신대리·내추리)에 항공기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공항 소음한도(공항인근지역 90웨클, 그 밖의 지역 75웨클)를 정하여 소음한도 초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시 방음시설 설치 또는 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설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 항공작전기지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한도 및 소음방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 종합적으로 볼 때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수치 이상의 소음을 겪고 있음에도 청주국제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에 해당되어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피해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공항은 소음피해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청주국제공항은 제외되어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주국제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할 조례 제정은 마땅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019.7.15.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19.8.21.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고, 본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시행령에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 실태 파악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욱 구체화되는 바 조례는 불필요 하다는 충청북도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청원채택(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 의견서 :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의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청원 채택 의견서

의견서

청원건명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
처리결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처리기관	충청북도지사
채택의견	<p>□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충청북도지사는 주민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적 소음측정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p> <p>□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함.</p>